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6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8)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5)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7)

상정된 안건

-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2)	6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8)	6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9)	6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5)	6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4)	7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1)	7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6)	7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5)	7
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7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7)	7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5)	7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0)	7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7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7)	7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3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건 중 국정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한 다음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현재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여야 간 협의를 이어 간 다음 오늘 본회의 종료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4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등 31개 소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곳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부산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을 분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계획서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안)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6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감사 대상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서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영 위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9월 13일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관련해서 임대인의 국적을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HUG는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이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이름·나이·주소 이런 개인별 정보를 요구한 게 아니고 국적별로 나라별로 취합된 연도별 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외국인 전세임대 관련해서 사고 건수가 지금 한 40건이 됩니다. 그래서 국적별로 취합한 연도별 건수를 요청했습니다. 장관님께서 해당 자료를 본 의원실로 제출토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대구역 광장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법률 검토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상세한 자료들을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법률 검토보고서가 나왔으면 일단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국정감사 중에 적당한 때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미리 배포해 주십시오.

또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조금 이따……

○위원장 맹성규 이것 끝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앞서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 5일 저희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의결로 국토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12일에 국토부 측에서 각 의원실로 한 장짜리 문건이 제출됐습니다. '서류 미제출에 대한 소명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이 문건을 수령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못 내겠다, 한 장짜리 평계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건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서가 의미가 없는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려면 국회증감법 제4조 1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명서 제출기한이 일단 도과됐기 때문에 소명서 제출을 저희가 받지 않았다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요건도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소명서 내용을 요약하면 대통령 관저가 국가중요시설이어서 국회증감법 제4조 1항 단서조항에 따라 제출이 불가하다라는 것인데 이 단서조항을 제대로 읽어 보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할 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토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국가안위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위가 지난 5일 의결한 요구 사안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PT가 띄워져 있는데요. 이 대장의 항목들을 좀 보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르면 여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누가 발주하고 누가 도급해서 얼마를 받고 진행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국가안위와 어떤 상관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국토위가 관저나 대통령실에 도면을 제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기·통신 공사에 사용된 기자재 목록이나 방탄유리 브랜드, 규격을 알려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한번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꽤 양은 되는데요. 감사보고서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건설공사대장에 기입됐을 법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 31쪽 관저 보수공사의 주요 공정 및 시공업체·시공금액 요약, 124쪽 관저 보수공사 하도급 현황, 125쪽 조치방안 마련 대상업체 내역. 이런 자료들은요 각 업체들이 어떤 공사를 수행했고 그 금액은 얼마고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았는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비록 보고서에는 이 업체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익명 처리돼 있어요.

○위원장 맹성규 마무리하세요.

○한준호 위원 이건데 이 내용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 게……

○위원장 맹성규 예, 마무리하세요.

○한준호 위원 이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주시고요.

익명은 돼 있는데 상호 대조만 해 봐도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토부가 국가안위를 들먹이면서 못 내겠다고 하는 이 정보들 상당 부분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기밀에 접근합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자료 출처가 다 국토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볼 때는, 이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21그램 연혁을 한번 보면 2015 마크 로스코전 그리고 2017년에 자코메티전, 이 공사를 한 곳 전부 다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컨텐츠가 한 전시입니다. 코바나 사무실 설계 시공도 벼젓이 적어 뒀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과 관계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맹성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한준호 위원 아니, 마무리할 거예요. 들어 보세요.

그래서 누가 이런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기에……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고 국감 때 할 겁니다.

○한준호 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머무른 이 모든 공간을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국민의 의혹입니다.

○**김은혜 위원** 아니, 국감 때 할 것을 지금 하는 건 무슨…… 지금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위원장 맹성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

○**권영세 위원** 국감 때 할 거니까 나중에 하라 그러세요.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준호 위원** 그래서 국토부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고발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김정재 위원** 원칙에 맞춰서 하세요, 위원장님.

○**김희정 위원** 의사진행의 원칙을 좀 지켜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 원칙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드리고 관저 공사 관련자들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회 측에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들, 지금 한준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증인 채택의 건도 추가로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장관님, 지금 한준호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국토부장관의 서류 미제출에 대한 소명서를 저도 봤고, 그런데 그다음 날 감사원에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공개된 자료하고 이렇게 잘 조합을 해 보면 어떤 업체가 어떤 사항으로 위반됐는지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게 국토부가 제출한 내용하고 좀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 때 아마 상세히 질의를 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감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자료를 그리고 설명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예, 준비해서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왜냐하면 소명서하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한준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의사일정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2)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8)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9)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5)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874)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1)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6)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5)
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7)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5)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0)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4)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7)

(11시16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1항까지 총 18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5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택 의원,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 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고,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인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허가구역의 제기간을 재생사업의 시행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양육권 보호를 통한 안정된 근무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 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주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대상과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조치 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의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등 이른바 악성 임대업자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근거를 마련하며, 보증회사가 등록말소 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종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도 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규정한 경과조치를 2년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세 의원, 김상훈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의 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며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재난 등의 경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폭넓게 허용하면서 조합이 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4일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2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종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폐달블랙박스 등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민간사고분석업체 등의 거짓정보제공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권영진 소위원장님과 문진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갈 게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안 위원님.

○안태준 위원 어제 차관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까 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실 때 온라인 의결을 우선하도록 한다 했는데 법안 어디에 그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제가 어제 공동주택관리법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봤는데……

○안태준 위원 그게 혹시 어디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35페이지의 7항 보시면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안태준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기타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지금 전체 법안 한목에 다 일괄 통과시키려는 것이지요?

○위원장 맹성규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안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윤종오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건건이 의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건건이 의결할 건데……

○윤종오 위원 건건이 할 때 그때 이야기하면 됩니까?

○위원장 맹성규 예.

○윤종오 위원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때 하시겠습니까?

○정점식 위원 아니, 전체 대체토론을 지금 거의 종결하기 직전인데 말씀을 하셔야지.

○윤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제가……

○위원장 맹성규 그러세요.

○윤종오 위원 다른 일정 때문에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3항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6년 단기임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8 대책 연장선상에서 나온 법안으로 보이고요. 전세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사실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 없이 단기등록 임대사업자만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앞뒤가 바뀐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도시정비법과 관련돼서도 이 법안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유로 안전진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의 남발을 초래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공급 효과도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재건축 단지 실거주민의 70% 이상이 세입자라는 점에서 주거 안정에도 역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과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는 반대 입장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른 위원님?

손 위원님.

○손명수 위원 저도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앞에 좀 못 들었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빌라 등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안이 다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히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0% 정도의 반환보증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시가도 공시지가의 126%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올해에만 예상되는 HUG의 손실액이 이로 인해서 4조가 넘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그 정도였고. 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소위 세를 구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빌라 형태라도 세입 지원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게 지금 빌라를 몇백 채씩 건설을 해 가지고, 더구나 이 제도가 다시 부활되면, 지금 현재도 HUG의 보증 사고 대부분이 많게는 수백 채 적게는 수십 채를 가진 소위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것을 아예 더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이 수조에 해당되는 돈을 차라리 매입임대를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건설을 해서 임대를 주면 임차인도 지원이 되고 이 재원이 소위 나쁜 사람에게 갈 일이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국가기관은 수조씩을 악덕 임대업자나 결국은 건설업자까지 포함이 되지요. 그 사람들에게만 결국 이게 지원되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물론 여기는 임대인이 보증을 들게 돼 있지요. 그런데 개별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료도 내고 대출이자도 내고 나중에 돌려받기는 하지만 결국 그 돈은 국가가 물어 주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차라리 이 큰 재원을 좀 합리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저는 이 주거복지정책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돈을 써야지, 악용되는 게 이미 17년 이후에 거의 수년 동안에 걸쳐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게 통계로 드러나고 이미 다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왜 이게 더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반대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양해해주시면 회의록에 의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남기고 표결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항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9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3항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수 위원** 이의를 달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윤종오 위원** 이의는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의를 달아 놨어요.

○**위원장 맹성규** 회의록에 표기를 하니까.

의사일정 제14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크게 동의를 해 주셔야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15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9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자동차순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동차순해배상 보장법 등 총 1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관련하여 윤종오 위원님 손명수 위원님,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본 개정 법률안이 빌라 등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촉진해서 궁극적으로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드리고 지적해 주신 전세사기 발생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보류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신청한 위원이 철회를 요구하거나 출석요구일자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철회 및 출석요구일자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에 대한 겁니다.

김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혜 위원** 모처럼 여야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참고인 협의 결과를 받아 보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든 아니면 주변의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로부터 신혼희망타운이 미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태를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어렵게 사전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본청약 일정이 기약 없이 미루어져서 공사비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진 부담을 떠안게 됐고 또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 그분들이 마주한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분들은 조금만 참으면 새집 간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죄가 있다면 정부를 믿은 죄 때문에 아이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누가 말이라도 해 줬으면 좋으련만 알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캄캄한 동굴 속에 홀로 갇혀 있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목소리를 누가 들어 줘야겠습니까? 정쟁의 요소 단 하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민생입니다. 국가정책의 피해자,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걸까요? 길거리에 나앉게 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도대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하셨다는 데요. 존경하는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께서는 신혼희망타운 피해자분을 왜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 내가 답변해야 될 이유가 없지.

○**김은혜 위원** 아니, 신혼희망타운 피해자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걸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전용기 위원** 못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

○**김은혜 위원**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국회의원의 책무지요.

○**문진석 위원** 제가 왜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 김 위원님이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렵게 증인하고 참고인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니까……

○**김은혜 위원** 합의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요청을 했고 제가 간사님께 이것을 요청드렸는데 민주당 간사님으로부터 왜 신혼희망타운 피해자분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는지 저는 합당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간사도 그 이야기를 못 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위원님……

○**김은혜 위원** 저희 간사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문진석 간사님이 이야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이런 게 있지요.

○문진석 위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김은혜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국민들이 다 듣고 계시는데 굳이 답변을 피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문진석 위원 내가 답변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 가만 계세요.

양당에서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이 다 반영이 됐다면 당연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을 여기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계신 데서 다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저희 민주당에서 요구한 증인·참고인 중에서도 누락되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한다면, 간사 간에 협의도 그렇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비공식적으로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은혜 위원 아니, 제가 이런 일을 비공식적으로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진석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증인 한 명 한 명 다 설명할까요?

○김은혜 위원 아니요. 이것 보십시오. 아까 분명히 문진석 간사님께서 저희 여당 위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지 증인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원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신 성의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룰 중의 하나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룰이 맞지요. 그 원칙에 따라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쪽이 저희도 많고 민주당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룰에 따라서……

○문진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가 저희들이 논쟁하는 자리도 아니고 여야 간사 간……

○김은혜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주세요. 동료 위원들의 말을.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김은혜 위원 저 이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같은 룰이 일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됐다면, 적용이 왜 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는 특정한 증인에 대해서는 들어갔는지 안 여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정쟁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피해자들,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목소리를 듣는 게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민주당이 반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석연찮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또다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건 저희들 국정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내용은 충분히 개진하시고 아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은 특별한 의견이 안 계시면……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저도 재선 때 간사를 해 봤습니다. 최인호 간사님이랑 같이했었고 나름 대로 그때 우리 맹성규 위원장님 모시고 굉장히 잘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아쉬움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양쪽 간사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진석 간사님께서 아까 저희 소위원회실로 오셔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리를 지르시고 이랬던 부분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상대 간사가 상대 위원들한테 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나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증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게 있지요. 지금 양평고속도로라든지 대통령실 불법 증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등등,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이건 사실은 정책적인 건데 정치적인 걸로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불법 채용 문제라든지 등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사건들의 증인·참고인은 다 채택이 됐고 저희는 간사님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0%입니다.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을 전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진석 간사님께서는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이지 문재인에 대한 국감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업 비리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FC 후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 항공의 채용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은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참고인 채택은 저는 충분히 배제를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100% 합니다. 지금 양평고속도로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세 분을 증인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벌써 지난하게 수많은 토론과 상임위에서도 많은 증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또다시 이렇게 재탕, 삼탕, 사탕, 오탕을 한다는 데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한 룰, 두 양 간사님이 정하신 룰인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증인·참고인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룰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한 이 3명 그리고 저희 당에서 요구한 이 3명, 양평고속도로에 관해서는 이분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국토부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에서 참고인 조사가 곧 있다고 벌써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국감장에서 증인 신문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간사님들께서,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것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꼭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만 소명을 할게요.

○**이소영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하시고 먼저 위원 의견을 들으시지요.

○**문진석 위원** 잠깐만, 제 얘기를 하도 일방적으로 하셔서 잠깐 소명을 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말씀하세요.

○**문진석 위원** 김정재 위원께서, 아까 제가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요. 간사님 뵈려 갔는데 세 분의 여성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하셨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당신 멋대로 간사 멋대로 정리하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누가 이 기준을 정하냐’,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제삼자들이 봤을 때는 왜 거기 들어가서 봉변을 당하고 오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과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일이 간사 간에 얘기된 것을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다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 나갑니까?

그리고 중인도 국민의힘에서 아홉 분 신청해서 아홉 분을 받았고요. 저희는 열두 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중인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많은 중인들을 채택하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중인을 채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의석수에 비례하면 거의,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두 명이 더 많다 이런 정도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요구한 중인을 채택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양평고속도로 중인들은 다 빼겠다, 내가 신청하지 않은 중인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재 위원께서 판단합니까? 국정감사 위원들 개인의 의정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결국은 작년에 국정감사 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미진한 게 있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또 중인을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하고는 배치된다. 김정재 위원께서 그것을……

○**김정재 위원** 간사님께서 이것 수사 중인지 아셨어요? 수사하고 재판 중인 것은 뺀다면서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저희한테 수사 중, 재판 중인 건 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사 중인 것을 모르셨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진석 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입씨름하는 게 아니라 수사 중이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정재 위원**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1년이 넘었는데?

○**김정재 위원** 오늘도 수사를 받았어요.

○**문진석 위원** 예?

○**김정재 위원** 오늘도 수사를 받았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건 빼야지요. 양당 간사 률에 의해서 수사 중인 건 빼야지요.

○**문진석 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 없이 의결을 하시든가 아니면……

○**김정재 위원** 그리고 부동산, 왜 저희 것은 하나도 안 넣어요? 왜 뭣 때문에 안 넣어요?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는데 왜 하나도 안 넣습니까?

○**이소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이소영 위원** 제가 오늘 진짜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요. 누가 보면 국민의힘 위원님들 신청한 증인만 다 빼지고 민주당 위원들 신청한 증인은 전부 다 채택된 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신청한 증인은 절반도 채택이 안 됐는데요. 정치적인 사건이라 채택이 안 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서울시의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아무 과학적 근거 없는 충전율 제한으로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마다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 정치적인 질의입니까, 정책 질의입니까? 이것 수사 중입니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교통패스 정책, 온실가스 전혀 줄어들지 않고, 지금 K-패스·경기패스랑 혼선 생기고 있어서 증인 신청했습니다. 이것 정치 질의입니까, 정책 질의입니까? 이것 수사 중입니까?

그 률에 따라서 이것 빼질 이유가 없는데 다 빼겠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위원이 반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유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짐작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심기 불편할까 봐 그러셨나 보다. 그래도 합의가 됐다고 해서 지금 아무 말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청한 모든 증인을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냥 그 사정을 이해 하므로.

그런데 지금 마치 내가 신청한 증인은 전부 채택돼야 되고 남이 신청한 증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저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정책 질의 증인 신청 잘린 사람들 다시 다 검토하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은혜 위원** 한 번만.

○**위원장 맹성규** 그만하시지요.

○**김은혜 위원**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취지를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합의하려고 했던 노력도 이해합니다. 간사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얼마나 많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니까 나중에 여야 간 합의가 돼서 다행인데 제가 이스타항공의 대표를 요청하니까 그것 문제인 아니냐. 그러면 문제인 국감 하지 말라. 문제인 국감이 아닙니다. 이스타항공이 교통약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스타가 아닙니다. 이 이스타입니다. 이 이스타하고 그 이스타 헛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을 얘기하는 건데 그 민생이 마치 문제인을 건드릴까 봐, 죄송합니다, 문제인 전 대통령을 건드릴까 봐 혹은 이재명 대표를 건드릴까 봐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정말 들어야 될 애꿎은 피해자를 발라내고 싶다는 그 느낌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이제……

전 위원님.

○전용기 위원 저도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원장 맹성규 예.

○전용기 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강력히 해 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위원들이 간사한테 질문을 하는 행태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5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데 처음 있었던 일 같고요. 여야 간사 협의 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오픈하면서 밖에서 있었던 일까지 지금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회의 진행을 좀 더 순조롭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마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씩 양보를 해서 여야가 잘 합의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번 증인하고 참고인 선정 과정에서도 아마 위원님 개개인들한테 많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국민들께 그리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고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아마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그냥 위원님들의 의견을 마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은 기관증인과 국정감사 기간 중 첫 주에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할 일반증인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 종합감사 등 향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출석을 추가로 요구할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 간에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23인)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김태영	21그램 대표	10. 7.(월) 국토교통부 등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아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건축사무소 대표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설영만	(주)대한 대표이사, 도로기술사회 사업부회장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관련
이상화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신익태	올댓캠퍼스 대표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
윤은혜	코뮨아이 대표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관련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사고 관련 질의
류궁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관련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항공시스템 미비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		시행-시공사 간 갑질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 사장	10. 11.(금)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정책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10. 11.(금) 국가철도공단	고려아연 M&A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우려 해소방안

참고인(4인)

성명	직업·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청이유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준비위원회 위원장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이현석	R&R 물류 대표이사		포스코이앤씨-R&R물류 평택센터 사업 관련
김종대	개인택시조합원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당징수 관련 택시운전자 의견 청취

○출석 위원(29인)

권영세 권영진 김기표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서범수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엄태영 염태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이소영 이연희 이춘석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한준호 황운하

○청가 위원(1인)

복기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입법심의관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제1차관 진현환
제2차관 백원국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건설정책국장 김상문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전형필
철도국장 윤진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경안
기획조정관 정인권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보고사항】

○의안 회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9. 4.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6)

이상 12건 9월 5일 회부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5.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1)

이상 2건 9월 6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7)

이상 3건 9월 9일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7)

이상 2건 9월 10일 회부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황운하 의원·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9)

이상 3건 9월 11일 회부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9. 11. 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3)

이상 8건 9월 12일 회부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3)

이상 2건 9월 19일 회부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3)

이상 2건 9월 20일 회부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4)

이상 2건 9월 23일 회부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2)

이상 7건 9월 24일 회부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9. 2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9)

이상 5건 9월 2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9. 9.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9. 9.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9. 9.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2)

이상 3건 9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4. 9. 10.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7)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2024. 9. 10.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이상 3건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9. 11.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9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0)

9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

(2024. 9. 12. 최동혁 외 137인으로부터 윤후덕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39)

9월 3일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1)

8월 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2)

8월 5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2.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7)

8월 1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0)

8월 1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8)

8월 2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8.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2)

8월 2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7)

8월 3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4.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6)

9월 5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1)

9월 1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0)

9월 20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	비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871호	2024. 9. 3.	대통령령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82호	2024. 8. 21.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83호	2024. 8. 23.	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부령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85호	2024. 8. 30.	부령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24-164호	2024. 9. 6.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0호	2024. 8. 29.	입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11호	2024. 9. 5.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04호	2024. 9. 4.	입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7호	2024. 9. 2.	입법예고